

■ 유전의학융합학술지(JIG) 간행/편집위원회 규정

제정일: 2019년 1월 31일

작성: 편집위원회

승인: 유전의학융합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 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목적)

유전의학융합회(이하 학회라 칭함)의 학회 회칙 제4조에 의하여 유전의학융합학술지(이하 JIG라 칭함)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3조 (편집위원 선정 기준)

1. 본 학회의 편집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2. 유전의학융합회 소속 회원인 자 (단, 외부 편집관련 전문인은 학회원이 아닌 자로 유전학관련 전문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3. 최근 3년간 전공 관련분야의 전국규모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제4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편집위원으로 총12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진흥재단 연구자 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사람 중 관련분야에서 연구업적 및 대외활동이 뛰어난 사람으로 선정한다.
3.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4. 선정된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5.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학회지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심의
2. 학회지 원고의 접수
3. 심사위원단 구성
4.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5. 논문 게재 여부 결정
6.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7.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8. 연구 윤리 또는 출판 윤리 위반에 대한 사항

제6조 (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연 1회 정기 편집위원회를 소집하며, 필요시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의결이 필요한 사항일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제반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FAX를 이용한 서면 회의로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편집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른다. 본 규정 및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결정사항은 학회의 정관을 준수해야 하며,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1. 본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유전의학융합회 정관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